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0-56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-

발의년월일: 2020. 6.

발 의 자: 강명숙 외 1명

## 1. 수정이유

제22조의2제2항에서는 인원수를 탄력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각각의 호에서는 인원수를 확정하고 있어 일부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제22조의2제2항제3호 중 “전문가 4명”을 “전문가”로 한다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2조의2제2항제3호 중 “전문가 4명”을 “전문가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2조의2(수탁자 선정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관광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<u>전문가</u> 4명</p> <p>③ · ④ (생략)</p>	<p>제22조의2(수탁자 선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전문가</u>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